

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(SPS)

WTO SPS 협정상의 권리와 의무 재확인 (제8.2조)

- 양국은 WTO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(SPS 조치)의 적용에 관한 협정상의 서로에 대한 자국의 기준의 권리와 의무를 재확인※ SPS조치: 사람과 동·식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위생 및 검역 조치(질병, 오염물질 관련 규제 등)

SPS 위원회 설립 (제8.3조)

- 구성, 설치 및 회합
 - SPS 사안을 담당하는 각 당사국의 대표들로 구성
 - 협정 발효후 45일 이내에 위원회의 위임사항을 규정하는 서한 교환을 통해 위원회 설치
 -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최소 매년 1회 회합
- 목적
 - WTO SPS 협정의 이행 증진
 - 인간·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·건강 보호

- SPS 사안 관련 협력·협의 증진
- 양 당사국간 무역 촉진

■ 임무

- 과학적 위험분석이 각 당사국의 관련 규제기관에 의하여 수행되고 평가됨을 인정
- SPS 관련 규제절차에 대한 상호 이해 증진
- 무역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SPS 조치의 개발 및 적용 관련 사안 협의
- WTO SPS 위원회 등 SPS 관련 국제 및 지역 포럼에서의 입장 및 의제 관련 협의
- SPS 관련 기술협력 활동 조정 증진
- WTO SPS 협정에 대한 특정 이행 문제 관련 양자적 이해 증진
- 동물건강, 식물건강과 육류, 가금육 및 가공계란 제품 연례 기술협의 등 양국간 SPS 관련 협의체에서의 진전사항 검토

분쟁해결 (제8.4조)

- 양측간 SPS 조치 관련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도 한미 FTA상의 분쟁해결절차의 적용대상에서 배제